Gmail 김혜진 <a005339@gmail.com>

RE: 호봉 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의 일

3개의 메일

달빛서리 <ssangwol@daum.net> 2021년 8월 2일 오후 12:59
받는사람: 김혜진 <a005339@gmail.com>

당시 담당자의 호봉계산오류는 중과실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청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잘못이 발생한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기간인 '발생한지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호봉계산은 당시 담당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오는동안 담당자 와 그 감독자는 호봉계산에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호봉이 계속하여 지급되게 하였고 학교측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최소 10년 이내 미지급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봉계산 잘못으로 인한 미지급 부분은 단순 임금채권으로 보아 임금채권 시효기간인 3년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인 것이고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면 10년이내의 호봉미지급금은 아직 청구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 원본 메일 ---------

> **보낸사람**: 김혜진 <a005339@gmail.com>
> **받는사람**: <shnahm72@naver.com>, <ssangwol@hanmail.net>, <kaw118@naver.com>
> **날짜**: 21.07.30 12:34 GMT +0900
> **제목**: 호봉 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의 일
>
>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교직원 김혜진입니다.
> 교원공제회 회원번호 J49065
> 연락처 010-5517-2716
>
> ■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산입여부
> - 확인결과 2002.9.1 정기승급 미반영
> - 2002.2.14~2003.2.13 육아휴직기간 근속불산입
>
> ■ 검토결과
> -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함(당시 관계법령 검토)
>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 현재로부터 3년까지 기간(2018.7~2021.6)에 대해 1호봉 인상된 보수 소급적용 검토
> - 산출된 소급적용 보수 예상액 지급예정
> - 2021.7 승급 반영
>
>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 2002. 9월~ 2018. 6월까지의 호봉 인상에 따른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
> 당시 호봉 승급에 있어 오류를 범한 담당자에게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입니다.
>
>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김혜진 <a005339@gmail.com> 2021년 8월 3일 오후 4:58
받는사람: 달빛서리 <ssangwol@daum.net>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일 (월) 오후 12:59, 달빛서리 <ssangwol@daum.net>님이 작성:
[받은메일 숨김]

김혜진 <a005339@gmail.com> 2021년 8월 5일 오후 12:06
받는사람: hyejin@hanyang.ac.kr

[받은메일 숨김]